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670호 2022년 9월 22일(목)

경 상 북 도

■ 조 례

-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18호)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19호)	10
○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0호)	13
○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1호)	16
○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2호)	20
○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3호)	26
○ 경상북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4호)	30
○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5호)	33
○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6호)	37
○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7호)	51
○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8호)	55
○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29호)	58
○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30호)	63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조례 제4731호) 67

■ 고 시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4호) 70
- 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5호) 74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6호) 76

■ 공 고

- 상주 석산~대포간 도로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15호) 78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21호) 81
- 경상북도 금고 지정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23호) 83

시 군

■ 고 시

- 문경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문경시 고시 제2022-151호) 86

■ 공 고

- 신음동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공사 분묘개장 공고(2차)(안)
(김천시 공고 제2022-2038호) 90
- 「용상~남선 신석간 교량가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용상1), 소로(1-용상2)]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안동시 공고 제2022-1793호) 92
- 군계획시설사업(대학: 영진전문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칠곡군 공고 제2022-1016호) 109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30호) 122



경 상 북 도

조 례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18호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 를 “전가(轉嫁)”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산하기관” 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로 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경상북도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경상북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경상북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3만원
2.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

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19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협의체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

원의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부터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경상북도의회의 추천) ① 경상북도의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관련 사업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사업
3. 지역 내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전 및 교통 활동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0호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1호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로움 극복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외로움”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행복 증진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외로움 척도의 개발)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민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척도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로움 현황 및 영향 요인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외로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
4. 그 밖에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로움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2호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경상북도지사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소관 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위치
2. 소관 시·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 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 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인력·자원 지원 현황, 시·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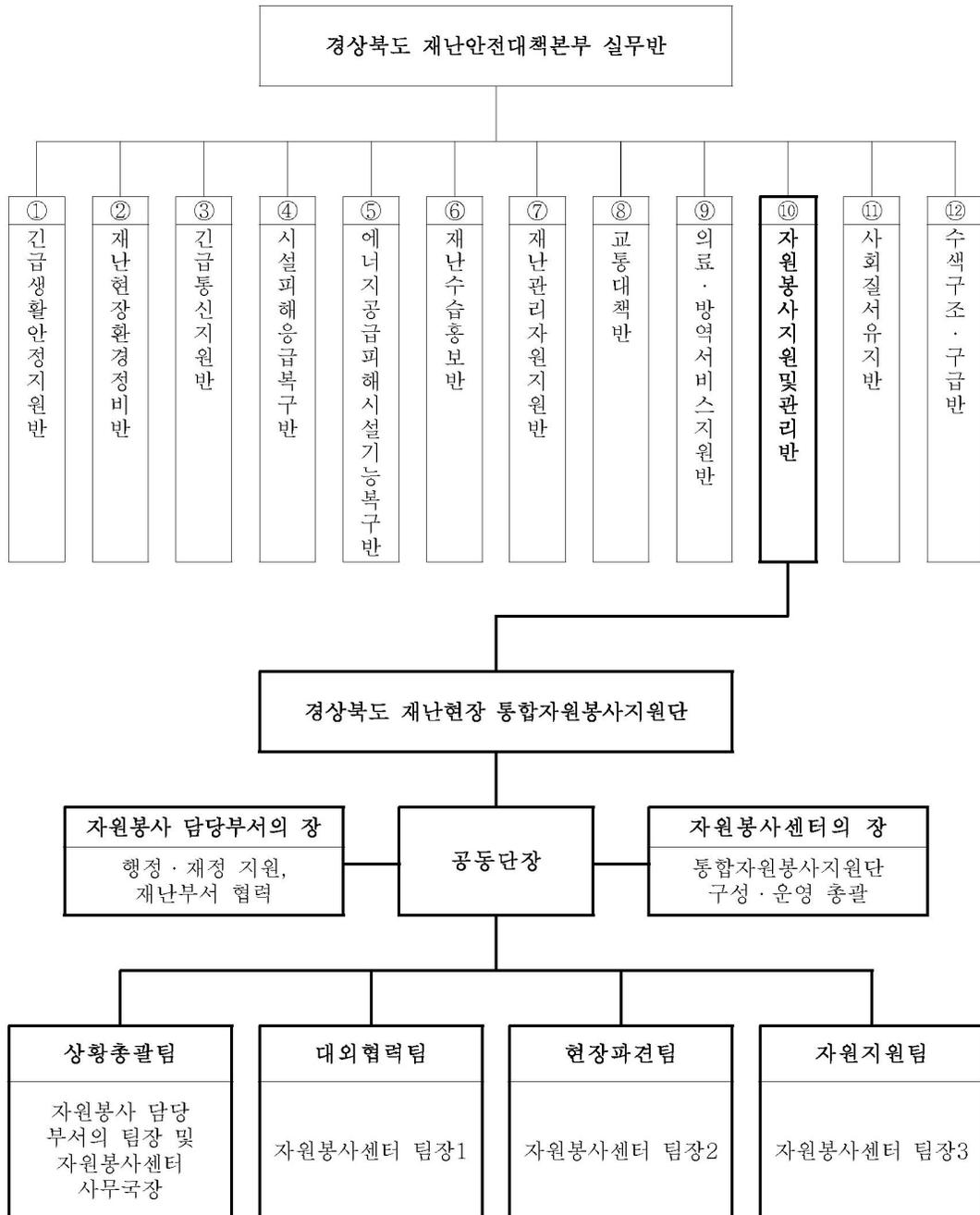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자원봉사센터” 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으로 한다.

[별표 1]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

(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성(명)	업무
상황 총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장 :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팀원 :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 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보고·정보공유 등)
대외 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팀원 :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배치와 활동의 조정 (자원봉사단체, 중앙자원봉사센터 연계) 타 기관 단체와 협력 출동! 무조건 재난지킴이봉사단, 이동 급식지원, 세탁차량 파견 요청 및 관리
현장 파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팀원 :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파견 및 업무 지원
자원 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장 : 자원봉사센터 팀장 팀원 :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원 가능한 보유 자원 관리 및 배분 타 시·도 자원 요청 및 관리 일일활동상황 취합 및 보고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3호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4호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 를 “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수책임물품” 을 “정수관리대상물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당 경비” 를 “일상경비”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품의 무상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

는 주민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 을 각각 “재무관” 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 가. 비품: 비품이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나. 소모품: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 가. 비품
 -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물품
- 나. 소모품
 -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및 OA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또는 진압장비, 의류, 핸드폰 등

3. 물품상태 분류기준

- 가. 신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나.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라.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5호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살리기운동”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활동, 정화활동, 연구·조사 활동 등을 말한다.
2. “물환경”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하여 말한다.

3.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도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3.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 및 발전사업
4.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군 하천살리기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하천살리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6호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경상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

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등) ① 도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경상북도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상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도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도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국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 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등

제18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도지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

력의 개선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24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물관리 사업)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7조(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도지사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

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도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지원센터의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의 예산조달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상북도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
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7호

경상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유통·판매업 등을 말한다.

5. “낙시환경지킴이”란 낙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시 관리 및 낙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낙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낙시 관리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낙시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낙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낙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낙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4. 낙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낙시문화 조성
5. 낙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낙시 관리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낙시문화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낙시터 환경 개선

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
 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
 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
 6. 낚시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7.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 ① 도지사는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지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8호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및 기자재, 인력 지원
3.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4. 전기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전기재해 시설 피해 복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방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29호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된 유망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2.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4. 대마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대마산업 지원) 도지사는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마 재배 사업
2.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3.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4. 대마 안전관리 사업
5.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마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도내 대마산업 육성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지원
2. 제5조에 따른 사업
3. 대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4. 대마산업 관련 기술 지원
5. 대마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 연구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2. 도 및 시·군 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대마산업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그 밖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마산업발전위원회) 도지사는 대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과학산업국장,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마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대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30호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를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나목” 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모두” 를 “연립주택 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
2.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일 것
3.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

④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7항 후단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 본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영 제40조의2제4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것
2. 시장·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사이에 서로 연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처리계획을 관리계획에 포함할 것

제5장(제2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구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2.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 관계서류

1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서류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완료되거나 폐지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3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인

2022년 9월 22일

경상북도 조례 제4731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제8조의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8조의5(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 5.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 6.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지형도면 등 작성 사유

- 현 도로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하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연장 (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현구역	지방도	922호선 (가은~청천)	시점 : 가은읍 완장리 404-2 종점 : 가은읍 완장리 산 63-8	96	없음	현 도로여건 반영	
변경 구역	지방도	922호선 (가은~청천)	시점 : 가은읍 완장리 404-2 종점 : 가은읍 완장리 산 63-8	49	없음		

3.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조서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922호선	노선명	가은~청천
접도구역의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기점 : 가은읍 완장리 404-2 종점 : 가은읍 완장리 산 63-8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 방지 및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분류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	7~65	주간선 도로	15,527	가은 도시지역 경계 하과리 942	소로 2-6 완장리 572-2	일반 도로	-	경고 553 (10. 12. 06)	지방도 922 호선
변경	소로	2	11	7~65	주간선 도로	15,527	가은 도시지역 경계 하과리 942	소로 2-6 완장리 572-2	일반 도로	-		지방도 922 호선

5.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 (도면제재 생략)

※ 붙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
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도

도면번호 속리 36708039



축척 1:1,200



「표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국토정보이용체계(KLIS)상에 등재하였음
 확인일: 2022년 월 일
 확인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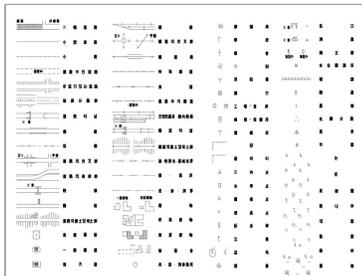
경상북도 고시 제2022-호
 2022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권한사항
 변경 및 신설부분에 한하여 유효함

색인도

속리 028	속리 029	속리 030
속리 038	속리 039	속리 040
속리 048	속리 049	속리 050

범례



변경 도로구역	(Blue outline)
변경 접도구역	(Red outline)
변경 교통시설	(Pink outline)
기정 도로(접도)구역 및 교통시설	(Dashed line)
계획관리지역	(Hatched pattern)
보전관리지역	(Green hatched pattern)
농림지역	(Green diagonal lines)

- 지정권자 : 경상북도지사
- 지정일자 : 2022년 월 일
- 고시일자 : 2022년 월 일
-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2-호
- 작성자 : (주)해동기술개발공사 전무이사 이주현
- 작성일자 : 2022년 월 일
-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 :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5호

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변경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상주시 택시 자율감차계획
 - 나. 감차기간 : 2020. 1월 ~ 2029. 12월 (10년)
 - 다. 감차규모 : 153대 (일반 45, 개인 108)
 - 라. 감차보상금액 : 일반 42,000천원/대, 개인 93,000천원/대
-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2. 변경사항 : 감차보상금액, 연도별 감차 규모 및 재원 확보 계획

3. 연도별 감차계획

가. 감차규모

(단위 : 대)

구 분	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감차대수	153	9	2	8	8	9	12	20	25	25	35
일반택시	45	0	2	3	3	3	5	6	7	7	9
개인택시	108	9	0	5	5	6	7	14	18	18	26

나. 감차재원 확보 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감차대수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계	153	11,662,000	592,800	11,069,200	
2020	9	640,000	31,200	608,800	
2021	2	70,000	7,800	62,200	
2022	8	530,000	31,200	498,800	
2023	8	591,000	31,200	559,800	
2024	9	684,000	35,100	648,900	
2025	12	861,000	46,800	814,200	
2026	20	1,554,000	78,000	1,476,000	
2027	25	1,968,000	97,500	1,870,500	
2028	25	1,968,000	97,500	1,870,500	
2029	35	2,796,000	136,500	2,659,500	

※ 지방비는 감차재단의 인센티브 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경상북도 고시 제2022-276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 9. 22 .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청도천)	교량 신설	〈신청도대교〉 L=670.0m, B=9.4m (영구 7,623㎡) (일시 1,403㎡)	경상북도 청도읍 청도읍 고수리 21-3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장 (도로공사2 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허가일로부터 ~ 2025.12.31까지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15호

상주 석산~대포간 도로개량공사 노선계획(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상주 석산~대포간 도로개량공사의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노선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 22.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사의 개요

- 사 업 명 : 상주 석산~대포간 도로개량공사
- 위 치 :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 대포리일원
- 사업규모 : 연장 2.4Km, 폭원 10.0m
- 설계속도 : 50km/h
- 사업시행 : 경상북도

2. 공사의 필요성

-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 대포리 지내에 위치한 지방도 901호선의 선형불량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함

3. 공사의 효과

- 지방도901호선의 선형불량구간 개량하여 통행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 지역균형발전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강화 등

4. 공사기간

- 설계기간 : 2022. 01. 10. ~ 2023. 01. 09. (12개월)
- 공사기간 : 설계 완료 후 3년(예상)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착공 1년	착공 2년	착공 3년	비 고
48	8	20	20	

※ 공사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금액)은 사업계획, 예산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2. 09. 22 ~ 2022. 10. 11 (20일간)

- 공람장소 :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 상주시청 건설과,
상주시 모서면 행정복지센터

7.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2. 09. 28 (수) 14:00 모서면 행정복지센터

8.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시기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청 도로철도과(☎ 054-880-3984, 담당 이희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 2022-16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대표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2. ~ 2022. 10.6.
2. **처분내용** :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3.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4. **당사자 및 처분원인**

허가번호	업체명	사업장소재지	대표자	처분사유
2015-0532015	주식회사 우진종합식품 농업회사법인	경북 영천시 청통면 용내길 72-48	강명재	`20년도 생산실적 미보고

5. 과태료 납부

가. 납부기한 : 2022. 10.14.(금)

나.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내 위생교육(4시간)을 재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고지서 송달을 원하시면 수신 주소를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 054-880-3452

2022. 9. 22.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고 제2022-1623호

경상북도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 경상북도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사항

구 분	금융기관명	취급 회계
제1금고	NH농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 소방안전 • 기 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재해구호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자활장학), 식품진흥기금, 에너지사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포플라장학기금, 고향사랑기금

구 분	금융기관명	취급 회계
제2금고	DGB대구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회계 : 치수사업,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학교용지부담금, 낙후지역발전 • 기 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장애인), 관광진흥기금, 여성가족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에너지종합타운주민지원기금, 문화진흥기금

□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시 군

고 시

문경시 고시 제2022-151호

문경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산북면 이곡리 505-1번지 일원의 갯마천 소하천 정비사업(문경시 공고 제 2022-1347호)을 위해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허가의 제처리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에 관한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문 경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갯마천(소하천)의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를」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을 결정하고자 함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8	갯마천	소하천	산북면 이곡리 505-1	산북면 이곡리 77-3	-	1.55	2.0 ~ 8.0	19,906.2	-	

■ 방재시설(하천)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8	갯마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1.55km - 폭원 : 2.0 ~ 8.0m - 면적 : 19,906.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갯마천(소하천)의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을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시 점 : 산북면 이곡리 214-4
- 2) 종 점 : 산북면 이곡리 183-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
- 2) 명 칭 : 갯마천 소하천 정비사업

다. 사업의 규모 : 갯마천 소하천 정비사업, 면적(A) = 7,141.5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문경시장
- 2)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모전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예정일 : 2022년 10월
- 2) 준공예정일 : 착수일 ~ 2025년 10월(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서 : 별첨(계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과(054-55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김천시공고 제2022-2038호

신음동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공사 분묘개장 공고(2차)(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기수 : 총 3기
2. 개장 사유 : 신음동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공사에 편입
3. 개장 방법
 - 무연분묘 : 1,2차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4. 분묘소재지

소재지	편 입 지 변(분묘번호)	기 수
김천시 신음동	산77-5임(1), 산76-10임(2,3)	3

5. 개장 장소 : 김천시내 법인 봉안당

6. 공고 기간 : 2022. 9. 22. ~ 2022. 11. 13.

※ 1차 공고 완료 : 2022. 8. 11. ~ 2022. 9. 21.

7. 안치 기간 : 봉안후 10년

8. 신 고 처 : 경상북도 김천시청 도로철도과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1284번지) ☎ 054-420-6336]

9. 신고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등)

10. 상기 지번 및 신음동 금음마을~아홉사리 도로개설공사 구간내에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본 공사 시행중 추가 발생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김 천 시 장

안동시 공고 제2022-1793호

**「용상~남선 신석간
교량가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용상1),
소로(1-용상2)]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용상~남선 신석간 교량가설공사」 - 안동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용상1), 소로(1-용상2)]사업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동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람 및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공람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2일

안 동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구간		도시계획 지정승인근거
		시점	종점	
용상~남선 신석간 교량가설공사	도로개설 L=1.31km B=11.0m	남선면 신석리 산139	용상동 475-5	안동시고시 제2021-286호 (2021. 9. 27.)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용상~남선 신석간 교량가설공사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인가일
-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60개월(예정)

5. 사업시행자 : 안동시장

6. 관계도서 및 기타 : 게재 및 공람장소 비치

7.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안동시청 건설과(☎ 054-840-632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소로(1-용상1), 소로(1-용상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1	남 선	신 석	산13 9	구	2,050.0	510.0	농림축산 식품부	국			
2	남 선	신 석	972 -1	전	1,983.0	1,044.0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기느리길 **	권**			
3	남 선	신 석	1173	구	4,083.0	64.0	농림축산 식품부	국			
4	남 선	신 석	1172	도	1,098.0	318.0	국토교통부	국			
5	남 선	신 석	972 -2	전	1,323.0	7.0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	권**			
6	남 선	신 석	972	전	2,506.0	476.0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기느리길 **	김**	근저당 권	안동농업 협동조합	
7	남 선	신 석	958 -3	전	579.0	239.0	안동시 용상동 **	김**			
8	남 선	신 석	959	과	4,030.0	71.0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	황**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9	남 선	신 석	956 -2	전	1,517.0	26.0	안동시 태화동 **	황**			
10	남 선	신 석	955	전	1,765.0	84.0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	김** 외 2인			
11	남 선	신 석	954	전	1,608.0	149.0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	김** 외 2인			
12	남 선	신 석	953 -4	전	648.0	71.0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	김** 외 2인			
13	남 선	신 석	953 -3	전	655.0	101.0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	김** 외2인			
14	남 선	신 석	953 -9	과	1,316.0	291.0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	남**			
15	남 선	신 석	951	과	2,996.0	881.0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	남**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16	남 선	신 석	949	전	1,013.0	389.0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	김** 외 2인			
17	남 선	신 석	943 -1	제	9,098.0	433.0	국토 교통부	국			
18	남 선	신 석	944	과	663.0	426.0	안동시 법흥동 **	이**			
19	남 선	신 석	944 -1	제	1,539.0	609.0	국토 교통부	국			
20	남 선	신 석	970 -1	도	448.0	119.0	안동시	공			
21	남 선	신 석	970	창	628.0	44.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	신** 외 1인			
22	남 선	신 석	971	전	2,136.0	218.0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	김**			
23	남 선	신 석	966	전	3,088.0	20.0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동 **	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24	남 선	신 석	965	전	3,521.0	560.0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고천지촌로 **	이**			
25	남 선	신 석	963	과	5,461.0	488.0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북**	김**	근저당 권	안동농업 협동조합	
26	남 선	신 석	958 -1	전	2,430.0	586.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	김**			
27	남 선	신 석	957- 1	전	981.0	132.0	안동시 용상동 **	유**			
28	남 선	신 석	953 -6	전	950.0	113.0	안동시 법흥동 **	이**			
29	남 선	신 석	953 -8	임	165.0	18.0	안동시	공			
30	남 선	신 석	953 -10	전	2,390.0	50.0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	정**			
31	남 선	신 석	953 -16	전	255.0	49.0	안동시	공			
32	남 선	신 석	948 -2	도	646.0	356.0	안동시	공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33	남 선	신 석	953 -1	전	1,965.0	17.0	안동시 용상동 **	권** 자			
34	남 선	신 석	951- 1	과	2,206.0	49.0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	남**			
35	남 선	신 석	950	전	904.0	351.0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	김** 외 2인			
36	남 선	신 석	948	전	484.0	120.0	안동시 법흥동 **	이**			
37	남 선	신 석	947 -3	전	658.0	62.0	임하면 송천동 **	김**			
38	남 선	신 석	947 -2	전	640.0	112.0	안동시 용상동 **	권**			
39	남 선	신 석	947 -5	제	6.0	6.0	환경부	국			
40	남 선	신 석	938 -3	전	2,037.0	201.0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김**			
41	남 선	신 석	945 -2	제	477.0	167.0	환경부	국			
42	남 선	신 석	938 -2	제	942.0	236.0	환경부	국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43	남 선	신 석	1160 -5	천	78,833.0	924.0	건설부	국			
44		용 상	490 -1	대	1,247	5	영주시 상망동 **	사회 복지 법인* *			
45		용 상	489 -4	과	2,516	2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길 **	권**	근저당 권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46		용 상	484	과	8,030	1,178	안동시 당북동 **	이**	근저당 권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47		용 상	532	도	7,203	167	농림축산 식품부	국			
48		용 상	483 -3	대	936	2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흥길 **	윤**	근저당 권	서부 새마을 금고	
49		용 상	483 -4	전	2,975	49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	강**	근저당 권 지상권	동남 새마을 금고	
50		용 상	482	전	476	43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길 **	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51		용 상	482 -1	전	2,460	553	안동시	공			
52		용 상	475 -1	과	7,432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길 **	조** 외 3인	근저당 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53		용 상	475 -5	과	4,958	1,3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길 **	조** 외 3인	근저당 권	국 주식회사 국민은행	
54		용 상	531	구	6,548	266	농림축산식 품부	국			
55		용 상	459 -4	과	3,671	232	안흥동 **	김** 외 1인			
56		용 상	459 -5	과	4,000	185	안흥동 **	김** 외 1인			
57		용 상	467	전	268	238	안흥동 **	김** 외 1인			
58		용 상	457	대	1,556	378	안동시 용상동 **	이**			
59		용 상	1519	도	4,588	223	농림축산 식품부	국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 면	동 리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성 명	
60		용 상	458	대	1,465	119	안동시 용상동 **	이**			
61		용 상	0-1	천		2,643					
62		용 상	458 -1	도	9	2	안동시	공			
63		용 상	457 -2	도	87	87	안동시	공			
64		용 상	1518 -65	제	21,712	10,410	국토교통부	국			
65		용 상	1518 -81	제	9,978	838	안동시	공			
66		용 상	456 -1	도	390	296	안동시	공			
67		용 상	456 -2	도	93	76	국토교통부	국			
68		용 상	1518 -84	제	3,080	938	안동시	공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사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1	안동	남선	신석	970	창고	조립식 23*6	138	m ²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수로 **	신** 외 1인	
					창고	조립식 4*3	12	m ²			
					화장실	조립식 2*1	2	m ²			
					수도시설		1	식			
2	안동	남선	신석	965	양수시설		1	식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고천지춘로 **	이**	
3	안동	남선	신석	963	유실수		1	식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북2길**	김**	
4	안동	남선	신석	958-3	유실수		1	식	안동시 용상동 **	김**	
5	안동	남선	신석	959	비닐 하우스		5	m ²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	황**	
6	안동	남선	신석	956-2	창고	블록 16*6	96	m ²	안동시 태화동 **	황**	1층
					창고	블록 8*6	48	m ²			2층
7	안동	남선	신석	953-6	유실수		1	식	안동시 범흥동 **	이**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8	안동	남선	신석	954	비닐 하우스	5*4	20	m ²	경상북도 안동시 옥서1길 **	김** 외 2인	
9	안동	남선	신석	953-9	유실수		1	식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	남**	
10	안동	남선	신석	951	유실수		1	식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	남**	
11	안동	남선	신석	951-1	유실수		1	식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	남**	
12	안동	남선	신석	950	담장	철제 휀스	61	m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	김** 외 2인	
13	안동	남선	신석	948	유실수		1	식	안동시 범흥동 **	이**	
14	안동	남선	신석	947-3	유실수		1	식	임하면 송천동 **	김**	
15	안동	남선	신석	947-2	조경수		1	식	안동시 용상동 **	권**	
16	안동	남선	신석	938-3	비닐 하우스		60	m ²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길 **	김**	
					비닐 하우스		31	m ²			

번 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주 소	성명	
					비닐 하우스		5	m ²			
					담장	철제 휀스	15	m			
17	안동	남선	신석	944	컨테이너	6*3	18	m ²	안동시 범흥동 **	이**	
					컨테이너	6*3	18	m ²			
					정자	5*3	15	m ²			
					정자	5*3	15	m ²			
					물탱크		1	식			
					유실수		1	식			
18	안동		용상	484	비닐 하우스		23	m ²	안동시 당북동 **	이**	
					비닐 하우스		50	m ²			
					비닐 하우스		59	m ²			
					비닐 하우스		76	m ²			
					비닐 하우스		74	m ²			
					비닐 하우스		193	m ²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주소	성명	
19	안동		용상	483-3	담장	블록	5	m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흥길 **	윤**	
20	안동		용상	482	업무용	조립식 32*10	320	m ²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길 **	권**	
					가추	8*10	80	m ²			
					가추	2*5	10	m ²			
					조경수		1	식			
21	안동		용상	482-1	비닐 하우스	53*14	742	m ²	안동시	공	
					창고	10*14	140	m ²			
					창고	5*10	50	m ²			
					창고	2*5	10	m ²			
					조경수		1	식			
22	안동		용상	475-5	유실수		1	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길 **	조** 외 3인	
					담장	철제 웬스	19	m			
23	안동		용상	459-4	유실수		1	식	안흥동 **	김** 외 1인	

번 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주 소	성명	
24	안동		용상	457	업무용	블록/ 슬라브 14*24	336	m ²	안동시 용상동 **	이**	
					창고	조립식 10*6	60	m ²			
					가추	철골 10*4	40	m ²			
					창고	조립식 8*9	72	m ²			
					담장	블록	14	m			
					화장실	블록/ 슬라브 2*2	4	m ²			
					조경수		1	식			
					유실수		1	식			
					바닥		1	식			
25	안동		용상	458	업무용	블록/ 슬라브	241	m ²	안동시 용상동 **	이**	
					창고	조립식	42	m ²			
					창고	조립식	20	m ²			

번 호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규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주 소	성명	
					업무용	조립식	6	m ²			
					업무용	조립식	14	m ²			
					가추		9	m ²			
					담장	블록	27	m			
					조경수		1	식			
					바닥		1	식			
					간판		2	식			
26	안동		용상	1518-65	중계시설		1	식	국토교통부	국	

[붙임2]

주민 등의 의견서

사업명	용상~남선 신석간 교량가설공사	
사업장위치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산139번지 ~ 안동시 용상동 475-5 일원	
사업시행자	안동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지역·지구 등의 지정(변경),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접수



의견수렴 여부 결정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칠곡군 공고 제2022-1016호

군계획시설사업(대학: 영진전문대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지천면 송정리 1100번지 일원의 칠곡 군계획시설사업(대학: 영진전문대학)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9. 22.

칠 곡 군 수

1. 열람기간: 2022. 09. 22 ~ 2022. 10. 06
2.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15)

3. 사업내용

가. 군계획시설(대학)사업 내용

사업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 고
대 학	영진전문대학	송정리 1100번지 일원	별도기재	2021년2월1일 ~ 2022년12월31일	

※ 금회 군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구역의 지적분할 및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과 이에 따른 현황상 학교 용도가 아닌 일부지역(묘지, 구거 등) 제척에 따른 학교시설 축소

나. 사업의 규모

(단위: m²)

구 분	시설결정면적	실시계획인가부지면적	비 고
기 정	773,900.0	317,694.0 (최초 승인 : 318,039m ²) [3차구역:313.333.0, 2차구역 4,361.0]	
변 경	770,427.9 (감3,472.1)	314,307.9 (감3,386.1) [3차구역:309.793.9, 2차구역 4,514.0]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학교명	위 치	세 부 시 설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영진 전문 대학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1100번지 일원	계	773,900	감)3,472.1	770,427.9	
			교육기본시설	133,477	101.6	133,578.6	
			지원시설	45,990	-	45,990	
			부속시설	127,704	220.3	127,924.3	
			기타시설	466,729	감)3,794	462,935	

라. 사업시행자

-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 성 명: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이사장 정 준 모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와 같음

바. 관계서류 및 도면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물건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1	칠곡	지천	송정	1100		학		216,092.0	216,092.0	626.0	62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2차구역 내
2	칠곡	지천	송정	산43	1100 -1	임	임	148,942.0	1,503.0	1,483.0	1,503.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3	칠곡	지천	송정	40		전		1,593.0		1,593.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4	칠곡	지천	연화	41		답		912.0		912.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5	칠곡	지천	연화	42		전		744.0		744.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6	칠곡	지천	연화	43		답		2,850.0		2,850.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7	칠곡	지천	연화	44		전		555.0		555.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8	칠곡	지천	연화	57		전		783.0		783.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9	칠곡	지천	연화	750		대		14,357.0		14,357.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10 22	칠곡	지천	연화	754	754 -7	답	답	1,886.0	441.0	435.0	441.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11 33	칠곡	지천	연화	907	907	구거	구거	678.0	678.0	678.0	678.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12	칠곡	지천	연화	산66-1		임		19,636.0		19,63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13	칠곡	지천	연화	산66-2		임		20,430.0		20,430.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14	칠곡	지천	연화	산68		임		11,901.0		2,061.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15	칠곡	지천	연화	산69		임		123,966.0		123,928.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16	칠곡	지천	연화	산70		임		44,481.0		44,481.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17	칠곡	지천	연화	산71-1		임		69,246.0		69,24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18	칠곡	지천	연화	산86		임		298.0		298.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19	칠곡	지천	연화	산87 -1		임		2,843.0		2,843.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20	칠곡	지천	연화	산87 -2		임		2,899.0		1,69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21	칠곡	지천	연화	산89 -4		임		1,225.0		1,225.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22	칠곡	지천	연화	산89 -5		임		396.0		39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23	칠곡	지천	연화	산89 -6		임		1,026.0		1,02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24	칠곡	지천	연화	산89-7		임		132.0		132.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25	칠곡	지천	연화	산89-8		임		336.0		33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지번제척
26 34	칠곡	지천	연화	산93	754-9	임	임	1,718.0	412.0	390.0	412.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27 25	칠곡	지천	연화	산93-1	754-10	임	임	16,530.0	1,181.0	1,201.0	1,181.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28 23	칠곡	지천	연화	산94	754-8	임	임	11,916.0	351.0	359.0	351.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29	칠곡	지천	연화	산147	57-1	구거	구거	216.0		216.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30	칠곡	지천	연화	산148	73-2	구거	구거	463.0		463.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31	칠곡	지천	연화	산149	73-1	구거	구거	364.0		364.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32 34	칠곡	지천	연화	산191	907-1	구거	구거	1,951.0	1,951.0	1,951.0	1,951.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기허가 예정지번
38	칠곡	지천	연화		1039		학		56,270.1		56,270.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예정지번
39	칠곡	지천	연화		1040		학		5,407.7		5,407.7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예정지번
40	칠곡	지천	연화		1041		임		110,695.7		110,695.7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예정지번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41	칠곡	지천	연화		1042		임		32,218.3		32,218.3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42	칠곡	지천	연화		1043		임		4,876.6		4,876.6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43	칠곡	지천	연화		1044		임		39,408.0		39,408.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44	칠곡	지천	연화		1045		임		7,494.9		7,494.9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45	칠곡	지천	연화		1046		임		1,706.6		1,706.6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46	칠곡	지천	연화		1047		임		154.6		154.6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47	칠곡	지천	연화		1048		임		3,145.9		3,145.9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48	칠곡	지천	연화		1049		임		2,191.9		2,191.9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49	칠곡	지천	연화		1050		임		37,779.0		37,779.0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50	칠곡	지천	연화		1051		임		5,295.1		5,295.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51	칠곡	지천	연화		1052		유지		158.8		158.8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52	칠곡	지천	연화		1053		유지		153.6		153.6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53	칠곡	지천	연화		1054		유지		155.1		155.1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54	칠곡	지천	연화		1055		유지		35.3		35.3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55	칠곡	지천	연화		1056		유지		17.7		17.7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복현동)	학교법인 영진교육 재단	예정지번
계	32필지 (26필지)							721,365	529,773.9	317,694	314,307.9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30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 9. 22.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인화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갈대고개길 18-5, 성모빌라 102호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18-1번지 일원 면적 : 1㎡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 시설개요 : - 오수관로 매설 1식(∅=150mm, L=5.0m, A=1㎡)
점 용 기 간	당초 :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19일까지 변경 : 2022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북의 새로운
힘으로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한 세상**